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성과평가

이 규 용*

I. 서론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장기 고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이나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제와 정치·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경제적 환경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은 기업의 소유권 변동이나 고용조정과 더불어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대두와 정보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WTO의 출범, 시장개방과 국제시장의 통합 등 세계화로 인한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급부상은 국내의 취업기회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간수준의 일자리 숫자를 축소시켜 일자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학력화 현상은 심각한 고학력자의 취업난 및 하향취업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ky@kli.re.kr).

이러한 경제사회의 급격한 구조적인 환경변화는 일자리 창출능력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대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큰 폭의 일자리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일자리 창출’ 문제가 경제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친화적 환경(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동력을 공고화하고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4년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추가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함으로써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가 새로이 시작한 추가적 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이들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 현황

1.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는 중소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증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와 교대제 근로의 전환을 통해 근로자수를 늘린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가 있다. 즉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는 현재의 일자리를 노동시간을 줄여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로 분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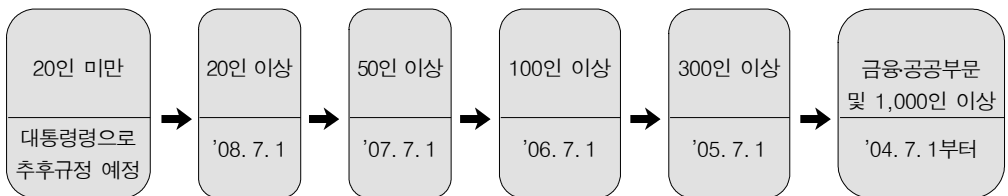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기존의 고용촉진사업에 속하여 지원되던 것이 2004

년 10월 법개정과 함께 고용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변경 시행된 것으로,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¹⁾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시행 시기가 2004년 7월 1일인 금융보험업 및 공공부문, 근로시간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양잠수산업 및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채용시 증가하는 노동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 욕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인력난 가중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인력을 확보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주 5일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내에서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1인당 분기 150만원인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까지만 지급한다.

[그림 1] 사업장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0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4조 이하의 경우에 한함)하여 전환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된 경우 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고시금액)을 1년간 지급(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 한도)한다.²⁾

2.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확대가 목표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과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채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실업상태의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있다. 결국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미리 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인당 분기 180만원(고시금액)을 1년간 지원(30명 한도)한다. 여기서 지원되는 ‘신규업종 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신규업종 진출계획 수립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교대제전환지원금은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서 교대제 전환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또는 고용유지의 모델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대제 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본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고시금액)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고시금액)한다. 반면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없이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원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³⁾.

한편, 근로자수 산정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축탁근로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그리고 월임금을 60만원 미만 지급받기로 한 자와 65세 이상인 자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 사업주에서 제외된다. 첫째, 지원금 수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둘째,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및 휴폐업중인 사업장, 셋째,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고용조정을 한 경우 등이다.

3) 작업환경 설비·복지시설의 범위(고시)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환경 설비

- 안전 관련 설비: 프레스전단기, 가스용접기(산소·아세틸렌, CO₂),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공기압축기, 로울러기, 연삭기, 산업용로봇, 절연 방호구 및 환선작업용 기구, 단조기, 버프연마기, 용해로, 주형조형기, 다이캐스팅기, 소성로, 포장기, 폐지압축기, 사출성형기, 벽돌블럭성형기, 혼합기, 스크류컨베이어 등
- 작업환경개선 관련 설비: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격리 및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습윤상태 유지설비, 고열, 한냉, 다습장애 예방설비, 온습도 조절장치 등
- 작업공정개선 설비: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설비(탑승식 차량 제외),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 진공빨판 등), 섬유원단적재설비, 원사빔 적재설비, 자동조형 및 탈사설비, 용탕주입 자동화 설비, 도금자동화 설비,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 설비 등

나. 복지설비

- 생활필수시설: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 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 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 문화, 체육, 금융, 편의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아이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
- ※ 통근차량의 경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확인 필요

다.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기존의 취업취약계층(고령자·여성·장기구직자 등)의 신규고용촉진 지원의 성격을 가진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 각종 장려금제도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한 것이다. 제도가 통합되면서 청년실업자(29세 이하)와 장애인(실업상태 3월 이상, 중증장애인은 1월)까지 포괄함으로써 대부분의 취업취약집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지급액은 각 계층에 대한 노동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004년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1)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①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②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③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및 부상, 신체적 감각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지급액: 근로자 1인당 1년 동안 고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제조업 500인 이하)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2) 장애인

지급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액: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며, 그 이외의 장애인은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45만원을 지급한다.

3) 청년실업자

지급대상: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액: 고용 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시행 기한: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악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3년간으로 제도 운영에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4) 여성가장

지급대상: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다⁴⁾.

지급액: 고용 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변호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인력(고시)을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원(고시)을 채용 후 1년간 지원(3명 한도)하는 제도이다⁵⁾. 단, 전문인력을 채용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손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5)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다음과 같다.

- 경영기획 담당자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 제품기술개발자
-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 기술기능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하고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4.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신제품·신상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데 있다.

III.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 평가

1. 사업의 활용실적

여기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활용실적을 통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활용실적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 339개 사업장, 2005년 353개 사업장이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실적이 2005년 8월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사업장이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증가정도를 보면 2004년은 1,33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이에 대한 지원금은 37.9억이다. 2005년에는 1,5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35.5억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장당 창출된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2004년은 평균 3.95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4.36개이다.

활용사업장 특성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40.4%)과 제조업(38.3%)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8.7%를 점유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 활용사업장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활용정도가 70~80%에 이르고 있다. 즉, 2004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49.9%에 이르고 30~99인 사업장이 36.0%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9%에 불과하다.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간단축지원금이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별 활용실적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각각 전체 활용사업장의 69.9%(2004년), 72.3%(2005년)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영남지역이 2004년과 2005년 모두 1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전 체	339	1,337	3,795,995	353	1,541	3,553,552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2)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의 경우 2개 제조업체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의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대제 전환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는 80개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48백만원에 불과하다. 2005년 들어 활용사업장이 다소 증가했지만 2005년 8월 현재 6개 업체에 불과하고 늘어난 일자리는 284개에 그치고 있다.

<표 2> 교대제전환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제조업	2	80	48,204	3	90	148,998
보건사회복지사업				3	194	134,100
전 체	2	80	48,204	6	284	283,098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나. 중소기업 빈일자리 채우기 사업의 활용실적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8개 사업장, 2005년에는 15개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쳤다. 이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고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규업종 진출에 따라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2004년의 경우 46개로 사업장당 평균 5.8개에 불과하다. 반면 2005년에는 161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업장당 평균

10.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원금은 2004년 49백만원, 2005년 27천만원에 불과하다.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주는 부담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 활용실적

(자료: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 액
전 체	8	46	49,812	15	161	273,366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에 6개 사업장, 2005년에는 17개 사업장만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고용환경 개선에 따른 늘어난 일자리는 2004년 16명, 2005년 77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2005년 5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장당 평균 지원액은 27백만원(2004년)에서 29백만원(2005년)에 불과해 3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전 체	6	16	162,339	17	77	502,195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3)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활용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의 경우 2,560개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6,11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사업장 특성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732개(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 614개(24.0%), 도소매업 480개(18.8%) 순으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71.4%에 이르고 있다. 기업규모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309개 소로 전체 활용사업장의 90.2%에 이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개로 0.5%에 불과하다.

<표 5>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단위: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전 체	2,560	6,113	3,391,827	7,967	41,530	23,856,56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4)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에 179개 사업장에서 245명이 신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364개 사업장에서 787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채용한 전문인력은 2004년은 평균 1.4명에 불과하였고 2005년에는 다소 증가한 2.2명이다. 지원금액은 2004년에는 5.4억원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활용인원의 급증으로 지원금액이 23.8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6> 업종규모 및 지역별 활용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2004			2005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금액
전 체	179	245	543,802	364	787	2,384,896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원자료.

2. 성과평가

가. 조사 표본의 구성과 점수계산 방법

1) 조사표본의 구성

사업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의 조사표본수는 <표 7>과 같다. 집행기관의 조사표본수는 40개인데 이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들 사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

<표 7> 사업별 점수계산에 고려된 응답자수

사업명	응답자수	
	집행기관	수혜업체
일자리 나누기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86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2
빈 일자리 채우기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36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82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97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사업	7

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하나의 설문지에 통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수혜업체는 사업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0개의 표본을 조사하였다.

2) 평가점수 집계방식

평가점수의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응답자의 설문항을 점수화한다. 5점 척도의 경우, 가장 낮은 척도에 2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척도에 10점을 부여한다. 즉, 척도에 따라 각각 2점, 4점, 6점, 8점, 10점으로 배점한다.

② 하나의 평가항목에 여러 개의 평가문항이 있을 경우, 평가문항들의 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항목의 점수로 한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위에서 구한 각 평가항목의 점수는 아래에서 구한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가중평균한다. 이 가중평균한 값이 평가주체별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④ 평가주체를 종합한 사업의 평가점수는 수행기관, 수혜자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를 평가대상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로 한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로 구해진다. 사업의 항목평가점수는 각 항목의 가중치로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사업의 가중평균 평가점수가 된다.

⑤ 예를 들어, 수행기관의 평가점수 집계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8>과 같다.

⑥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설문에서 응답한 백분비(%)를 비중으로 표현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난다. 만약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혹은 1에 미만될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의 백분비 배점)/(백분비 배점의 합)으로 조정하여 모든 평가항목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한다.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이는 집행기관과 사업체로 구분되었다.

<표 8>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집행기관용)

평가항목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항 배점기준
I. 계획단계	I. A. 사업추진 배경	A1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 점검	1) 조사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2	계획단계의 사전조사나 사전 점검	1) 조사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3	사업추진 당위성(필요성)	1) 매우 불필요(2점) 2) 불필요(4점) 3) 보통(6점) 4) 필요(8점) 5) 매우 필요(10점)
		A4	사업추진의 시기적절성	1) 매우 부적절(2점) 2) 부적절(4점) 3) 보통(6점) 4) 적절(8점) 5) 매우 적절(10점)
	I. B. 사업목표 타당성/ 실현가능성	B5	명확한 목표성과	1) 매우 미흡(2점) 2) 미흡한 편(4) 3) 보통(6) 4) 명확(8) 5) 매우 명확(10)
		B6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1) 매우 낮음(2점) 2) 낮음(4) 3) 보통(6) 4) 높은 편(8) 5) 매우 높음(10)
		B7	사업대상과 사업방법의 적절성	1) 전혀 적절하지 않음(2), 2) 적절하지 않음(4), 3) 보통(6), 4) 적절한 편(8), 5) 매우 적절함(10)
II. 집행단계	II. C. 정책공감대	C1, C2	추진배경 및 목표/사업 내용의 의견교환	1) 매우 부족(2) 2) 부족(4) 3) 보통(6) 4) 충분(8) 5) 매우 충분(10)
	II. D. 집행과정의 효율성/합리성	D3-1~ D3-6	집행과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정도	매우 부적절(2), 부적절(4), 보통(6), 적절(8), 매우적절(10)
III. 성과단계	III. E. 사업효과 및 지속성	E1	타실업대책과의 비교	1) 매우 적다(2) 2) 적은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III. F. 근무조건 및 근무기간의 안정성	F2	고용안정 및 고용지속성 평가	1) 매우 불안정(2) 2) 불안정(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F3	근무기간 안정성	1) 매우 불안정(2) 2) 불안정(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IV. 사후관리	IV. G. 사후관리의 합리성	G1	불만사항, 개선점 모니터링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G2	근무 연속가능성 모니터링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IV. H. 본부와의 피드백	H3	피드백 전달시스템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표 9> 평가에 고려된 설문 문항 예(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업체용)

평가항목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항 배점기준
I. 계획단계	I. A. 사업추진 배경	A1	다른 유사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조사나 사전 점검	1) 조사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2	계획단계의 사전조사나 사전 점검	1) 조사없음(2점) 2) 조사부족(4점) 3) 보통(6점) 4) 상당히 조사(8점) 5) 철저히 조사(10점)
		A3	사업 추진 당위성(필요성)	1) 매우 불필요(2점) 2) 불필요(4점) 3) 보통(6점) 4) 필요(8점) 5) 매우 필요(10점)
		A4	사업추진의 시기적절성	1) 매우 부적절(2점) 2) 부적절(4점) 3) 보통(6점) 4) 적절(8점) 5) 매우 적절(10점)
	I. B. 사업목표 타당성/ 실현가능성	B5	명확한 목표성과	1) 매우 미흡(2점) 2) 미흡한 편(4) 3) 보통(6) 4) 명확 (8) 5) 매우 명확(10)
		B6	사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1) 매우 낮음(2점) 2) 낮음(4) 3) 보통(6) 4) 높은 편(8) 5) 매우 높음(10)
II. 집행단계	II. C. 정책공감대	C1	집행기관과 기업간 의견 교환 여부	1) 매우 부족(2) 2) 부족(4) 3) 보통(6) 4) 충분(8) 5) 매우 충분(10)
	II. D. 집행과정의 효율성/합리성	D2.	만족도 1), 2), 3), 4), 5), 6)	매우 부적절(2), 부적절(4), 보통(6), 적절(8), 매우 적절(10)
III. 성과단계	III. E. 사업효과 및 지속성	E2	등제도가 없을 경우의 조치	1) 실시안함(10), 2) 실시함(4)
		E3	고용성과	1) 매우 적다(2) 2) 적은 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E4	타실업대책과의 비교	1) 매우 적다(2) 2) 적은 편(4) 3) 보통(6) 4) 큰 편(8) 5) 매우 크다(10)
		E5	사업지속성	1) 지속할 필요가 없다(4), 2) 개선하여 지속(6), 3) 현행대로 지속(10)
	III. F. 취업성과 및 근무안정성	F6	정규직 비율	○ 정규직 비율(B)/10
		F7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1) 매우 감소함(2) 2) 다소 감소함(4) 3) 보통(6) 4) 다소 향상됨(8) 5) 매우 향상됨(10)
		F8	근로자 만족도에 미친 효과	1) 매우 불만족(2) 2) 불만족(4) 3) 보통(6) 4) 만족(8) 5) 매우 만족(10)
		F9	지원금이 없을 경우 인원 증가 유무	1) 그렇다. 시중손실인원비중=(지원채용 인원(F6) - 지원 없을시 증가인원(F9-1))/(지원채용 인원(F6))*10 2) 아니다.(2)
		F10	사업종료후 계속고용 여부	1) 현재 지원기간 고용(6), 2) 지원 종료계속 고용(10), 3) 고용계약 종료(2)
		F11	타대책과 근무조건 비교	1) 매우 불안정적(2) 2) 불안정적(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F12	타대책과 근무기간 비교	1) 매우 불안정적(2) 2) 불안정적(4) 3) 보통(6) 4) 안정적(8) 5) 매우 안정적(10)
		IV. 사후관리	IV. G. 사후관리의 합리성	G1
G2	사업점검의 합리성			1) 매우 비합리적(2) 2) 비합리적(4) 3) 보통(6) 4) 합리적(8) 5) 매우 합리적(10)
G3	의견수렴 시스템			1) 매우 비효율적(2) 2) 비효율적(4) 3) 보통(6) 4) 효율적(8) 5) 매우 효율적(10)
IV. H. 제도에 대한 의견반영	H4		차기 계획에 의사반영 여부	1) 전혀 반영되지 않음(2) 2) 반영되지 않음(4) 3) 보통(6) 4) 반영되는 편(8) 5) 매우 잘 반영(10)

<표 10> 가중치 평가

평가주체	평가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배점기준
근로자	I.	E1_1	계획 단계	각 평가문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평가문항 점수/100
	II.	E1_2	집행 단계	
	III.	E1_3	성과 단계	
	IV.	E1_4	사후관리 단계	

나. 종합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가중평균값이 60.1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63.2점으로 평가되었다. 두 사업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업 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으로 65.5점을 기록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으로 58.8점으로 나타났다.

<표 11> 평가점수 종합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	종합
집행기관 평가	일자리 나누기	평 균	57.4	53.6	53.4	49.8	54.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62.0	56.7	57.3	50.6	56.8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52.8	50.5	49.5	49.0	50.1
	빈일자리 채우기	평 균	60.4	55.1	57.1	50.4	56.3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57.9	52.8	53.0	49.5	53.2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61.5	55.9	61.1	51.6	57.2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68.3	61.3	64.1	51.5	61.6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53.8	50.3	50.1	49.1	50.7	
수혜업체 평가	일자리 나누기	평 균	72.0	67.0	64.2	59.8	66.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71.5	64.1	65.8	59.7	65.8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72.5	70.0	62.5	60.0	66.5
	빈일자리 채우기	평 균	77.0	67.3	71.2	64.0	70.1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74.2	68.6	66.5	62.1	68.0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78.4	71.0	75.7	65.2	73.0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72.9	64.4	70.3	59.5	67.0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82.4	65.2	72.4	69.0	72.1	
평균	일자리 나누기	평 균	64.7	60.3	58.8	54.8	60.1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66.8	60.4	61.5	55.1	61.4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62.6	60.3	56.0	54.5	58.8
	빈일자리 채우기	평 균	68.7	61.2	64.2	57.2	63.2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66.1	60.7	59.7	55.8	61.1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69.9	63.5	68.4	58.4	65.5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70.6	62.8	67.2	55.5	64.5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68.1	57.8	61.3	59.1	61.8	

평가주체별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54.0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에 56.3점으로 평가한데 반해, 수혜업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66.0점,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에 70.1점으로 평가하였다. 집행기관보다 수혜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수혜업체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 일자리 창출지원정책 사업이 수혜업체의 입장에서는 집행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혜업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한 사업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으로 73.0점을 기록하고 있다. 수혜업체 평가를 단계별로 보면,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이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가 각각 77.0점, 67.3점, 71.2점, 64.0점으로 계획 단계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계획 단계에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은 82.4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은 78.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가중치 평가를 보면, 집행기관의 경우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 단계가 각각 0.32, 0.29, 0.20, 0.19로 계획 단계와 집행 단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반면, 수혜업체는 집행 단계(0.28)와 성과 단계(0.27)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표 12> 가중치 종합

집행기관평가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
			0.32	0.29	0.20	0.19
수혜업체 평가	일자리 나누기	평 균	0.25	0.28	0.27	0.20
		1)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	0.26	0.28	0.26	0.21
		2)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	0.24	0.28	0.28	0.20
	빈 일자리 채우기	평 균	0.25	0.28	0.27	0.20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0.27	0.26	0.27	0.20
		2)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업	0.24	0.29	0.27	0.19
		3) 청년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0.24	0.28	0.27	0.22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사업	0.24	0.28	0.28	0.20

IV. 요약 및 시사점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사업들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으로 시행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4개

의 사업실적을 보면 앞의 두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있어 2004년의 지원실적은 8개 사업장에서 4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다소 늘어난 15개 사업장의 161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실적은 미미한데, 2005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사업장은 17개 사업장이며 지원인원은 77명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7,967명개 사업장에서 모두 41,53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2005년 지원실적을 보면 364개 기업에서 787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추가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채용보조금 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성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사업실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된 일자리수는 2004년에 339개 사업장에서 1,337개이며, 2005년에는 353개 사업장에서 1,541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 2005년에 6개의 사업장에서 284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상 정량적인 측면에서 지원인원수만을 볼 때 교대제전환지원금이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들에 비해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평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즉, 위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각 사업의 계획 단계, 집행 단계, 성과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이 58.8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61.1점), 근로시간단축지원금(61.4점)이며 상대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64.5점)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65.5점) 사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배경이나 사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계획 단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점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데 비해, 사후관리의 합리성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의 사후 반영이라는 사후관리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낮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업효과 및 지속성과 취업성과 및 근무안정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대제전환지원금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2004년도에 추가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사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점검이나 의견수렴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를 제도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측면에서 보면, 현저히 사업실적이 낮은 교대제 전환금 지원제도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그리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장려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LI**

<참고문헌>

- 고영선·윤희숙·이주호(2004),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호·김승택·윤미례(2004), 「노동행정에 있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방안」, 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2004),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 김석진(2004), 「선진국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포인트 6」, LG주간경제.
- 김안국 외(2005),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2004), 「2004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 _____ (2003),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년)」.
- 유경준(2002),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규용 외(2005),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지표 연구」, 노동부.
- _____ (2005),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등 성과분석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 _____ (2006), 「2004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재정경제부(2004),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재정경제부.
-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